

칸트에게 있어서 '정치' 혹은 '정치적인 것'의 의미 국가 수립의 문제를 중심으로*

정 호 원 | 연세대학교

본 연구는 칸트에게 있어서 법이나 도덕으로 환원되어지지 않는 정치 혹은 '정치적인 것' 고유의 특징, 즉 독자성이 과연 존재하는지를 비롯해, 만일 존재한다면 그것의 핵심과 본질은 과연 어디서 찾을 수 있는지 등을 살펴보고자 하는바, 이는 칸트에게 있어서 정치와 도덕이 어떤 상관관계하에 놓여있는지를 밝혀보려는 보다 장기적인 도정에서의 연구계획의 일환이다.

칸트에게 있어서 공화국을 비롯한 국가의 수립은 궁극적으로 '도덕적으로 좋은'의 의미로서의 '좋은 인간'의 형성과는 무관한바, 내면의 세계에 해당하는 '심정'과는 달리 겉으로 드러나기 마련인 '행위'의 적법성에 기초한 '좋은 시민'의 형성에 의존한다. 나아가 이를 위해 절실히 요청되는 것은 "도덕적인 개선"이기보다는 "자연적 메커니즘의 인간사회에의 적용"이다. 이 때 "인간의 통치를 위해 자연의 기제를 이용하는 기술"을 '정치'라 부를 수 있는 한, 결과적으로 칸트에게 있어서 국가 수립의 문제는 한 마디로 '정치'의 몫인 것이다.

주제어: 정치와 도덕, 국가 수립, 합법성과 도덕성, 좋은 인간과 좋은 시민

I. 서론

본 연구를 통해 연구자는 칸트(Immanuel Kant)에게 있어서 법이나 도덕으로 환원되어지지 않는 정치 혹은 '정치적인 것' 고유의 특징, 즉 독자성¹⁾이 과연 존재하는지

*이 논문은 2013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2013S1A5B5A07046262).

- 1) 본 연구를 시작함에 있어서 유의해야 할 사항 한 가지는 독자성을 독립성 내지 자율성 개념과 동일시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전자인 독자성 개념이 후자를 포함하는 보다 상위 개념이라는 의미에서이다. 다시 말해 자율성 역시 독자성을 구성할 수는 있겠지만,

를 비롯해, 만일 존재한다면 그것의 핵심과 본질은 과연 어디서 찾을 수 있는지 등을 살펴보고자 하는 바, 이는 칸트에게 있어서 정치와 도덕이 어떤 상관관계하에 놓여있는지를 밝혀보려는 보다 장기적인 도정에서의 연구계획의 일환이다.

한편 칸트는 정치 혹은 ‘정치적인 것’의 속성을 기본적으로 어떻게 파악하고 있을까? 이와 관련하여 칸트의 저작을 통해 쉽사리 발견되기 마련인 최초의 실마리는 정치 혹은 ‘정치적인 것’이 도덕과 어떤 관계에 놓여있어야 하는가와 관련해서이다. 가장 널리 읽히는 저작에 속하는 『영구평화론』 덕분에 우리는 언제부터인가 다음과 같은 문구에 익숙해져 있다. 즉 “진정한 정치는 먼저 도덕에 경의를 표하고 나서야 전진할 수 있다(Kant 1795, 243)”라든가 “결국에는 정직함이 최선의 정치이다(Kant 1763, 669)”²⁾와 같은 표현들 말이다.

이들 문구에 따르면 칸트에게 있어서 정치 혹은 ‘정치적인 것’의 속성은 한마디로 도덕과의 긴밀한 관계에서 출발한다. 그에 따르면 도덕과 정치의 관계에 대한 칸트의 입장은 일견 이론의 여지없이 단호해 보인다. 즉 칸트에게 있어서 정치 혹은 정치적인 것의 기본적인 속성은 외견상 도덕과의 관계, 보다 구체적으로는 언뜻 보아 ‘도덕과 정치의 바람직한 관계’ 혹은 보다 구체적으로 표현해 ‘정치에 대한 도덕의 우위’에 의해 특징지어지고 있다.

칸트의 그러한 입장을 반영하듯 일찍이 슈람(Gerhart Schramm)은 “칸트적 체계에는 윤리학과 국가이론 사이에 중요한 관계들이 존재한다(Schramm 1938, 67f.)”고 천명한 바 있으며, 슈반(Alexander Schwan) 또한 유사한 맥락에서 “윤리학은 법철학 및 국가철학 분야에서의 질문과 답변에 대한 기반을 제공한다(Schwan 1993, 248)”고 밝히고 있다. 슈반은 한 발 더 나아가 “정치는 오로지 도덕에 복속됨으로써만 정당성을 얻는다. 칸트에게 있어서 정치는 도덕률(Sittengesetz)의 실현에 봉사할 뿐이며, 결코 자연적 욕구나 이해관계의 실현에 봉사하지 않는다(Schwan 1993, 250)”라고 주

어디까지나 독자성을 구성할 수 있는 여러 특징들 중 한 가지로서 일 뿐이다. 그 반대인 타율성 또한 독자성을 구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 2) 한편 흔히 『영구평화론』에 실려 있는 것으로 여겨지곤 하는 “정직이 최선의 정치이다”는 문구의 전후 맥락은 다음과 같다: “비록 정직이 최선의 정치라는 문장은 실천과는 유감스럽게도 매우 자주 모순되는 아론을 포함하고 있지만, 그러나 정직이 모든 정치보다 더 낫다는 마찬가지로 이론적인 문장은 모든 이의제기를 초월해 영원히 숭고할 뿐 아니라 후자, 즉 정치의 불가결한 조건이기도 하다(Kant 1795, 229).”

장함으로써 슈람이 언급한 “중요한 관계”의 내용을 구체화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슈람 및 슈반에 이어 정치와 도덕 사이의 긴밀한 관계에 대한 칸트의 주장을 ‘정치에 대한 도덕의 우위’의 관점에서 받아들이는 해석의 흐름은 “개인에게 요구되는 도덕성이 국가에도 요구되며, 이런 의미에서 (칸트는) 정치는 도덕성을 실현해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는 도덕적 정치를 강조(김용민 2001, 111)”한다는 입장을 거쳐 “정치도 … 내적 동기에 관계하는 도덕과는 구별되지만, 윤리학에 속하는 것에 변함이 없다. 따라서 정치에서는 윤리가 엄격하게 추구되며 … 비판전후기의 저작들을 통해서 ‘정직’이 가장 좋은 정치라는 입장은 일관되게 견지되고 있다(樽井正義 2009, 372)”³⁾는 주장으로 이어지고 있다.⁴⁾

3) 지난 1997년 일본에서 출간(한국에서는 2009년에 번역되어 출간)된 『칸트사전』에서 마사 요시는 “칸트는 … 정치철학이란 가치에 관한 윤리학의 일부라는 것을 강조”하였음을 주장하고 있다(樽井正義 2009, 373).

4) 이들 이외에도 칸트의 저작들에서 정치 혹은 정치적인 것에 관련된 행간의 숨은 논의들을 찾아내려는 노력, 그리고 그에 입각하여 결코 분절적이지만은 않은 칸트만의 고유한 정치철학 체계를 재구성해 보려는 학계의 시도는 꾸준히 이어져 오늘에 이르고 있다. 1995년 칸트의 『영원한 평화를 위하여(Zum ewigen Frieden)』를 오늘의 관점에서 재구성하면서 칸트 정치철학의 특징에 접근하고 있는 게르하르트(Volker Gerhardt) 역시 법과 정치와 도덕 3자 간의 관계에 관한 한 슈람이나 슈반의 관점을 공유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에 따르면 칸트에게 있어서 “정치는 법적으로 옳은(recht) 것, 보다 정확히는 법(Recht)이 가르치는 것을 실행함”을 의미한다(Gerhardt 1995, 156). 그런데 게르하르트에 따르면 만일 누군가가 정치와 법은 따라서 서로 구분이 되지 않는다는 식으로 이해하려 든다면 그것은 잘못이며, 오히려 그 반대, 즉 칸트는 그를 통해 정치와 법이 같지 않다는 사실을 말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법이나 도덕과는 구분되는 것으로서의 정치 혹은 정치적인 것의 구명을 시도하고 있다(Gerhardt 1995, 156ff.). 그가 『영원한 평화를 위하여』에 대한 자신의 상기 해설서에 ‘하나의 정치이론(Eine Theorie der Politik)’이란 부제를 붙인 것도 전적으로 그러한 맥락에서이다. 이후로 칸트 정치철학 연구에 있어서 또 하나의 의미 있는 저작이 출간되는데, 그것은 1999년 카테르(Thomas Kater)에 의해 출간된 *Politik, Recht, Geschichte – Zur Einheit der politischen Philosophie Immanuel Kants*라는 제목의 저작이다. 이 책에서 카테르는 칸트의 정치철학이 모두 세 가지 영역 - ‘정치적인 것’의 철학, 법철학, 역사철학 - 으로 구성되어있음을 역설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첫 번째인 ‘정치적인 것’의 철학은 원칙에 의거한 ‘공동의 삶(Miteinander)’을 구성하는 문제를, 법철학은 그러한 원칙을 근거지우는 문제를, 그리고 마지막으로 역사철학은 그러한 원칙이 현실로 나타날 수 있다고 가정하는 것이 과연 얼마만큼 유의미한가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것이다(Kater 1999, 20ff.). 뒤이어 2003년에는 *Repräsentation und Autonomieprinzip*이라는 책이 티레

이상에서 살펴본 바 ‘정치와 도덕의 바람직한 관계’ 혹은 ‘정치에 대한 도덕의 우위’와 관련한 칸트 자신의 표현 및 후대의 해석들로부터 정치 혹은 ‘정치적인 것’ 고유의 특징을 온전히 파악하기란 쉽지 않다는 것이 연구자의 판단이다. 왜냐하면 ‘먼저 도덕에 경의를 표하고 나서야 전진할 수 있는 것으로서의 정치’ 혹은 ‘오로지 도덕에 복속됨으로써만 정당성을 얻는 것으로서의 정치’ 혹은 ‘도덕률의 실현에 봉사해야 하는 것으로서의 정치’ 등과 같은 표현은 - 비록 정치 혹은 ‘정치적인 것’의 속성을 구성하는 부분들에 해당할 수는 있을지언정 - 정치 혹은 ‘정치적인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가리키지는 지는 전혀 드러내고 있지 않다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연구자는 본 연구를 통해 법이나 도덕으로 환원되어지지 않는 정치 혹은 ‘정치적인 것’ 고유의 특징과 관련하여 칸트가 자신의 저작을 통해 별도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 있는지를 지금껏 충분히 주목받지 못한 부분들에 주목하여 밝혀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무엇보다 칸트 후기의 저작, 즉 1781년의 『순수이성비판』 아래의 1차 저작(즉 독일어 원전)에 대한 면밀한 독해 및 그에 따른 체계적 분석에 의거해 앞서 제시한 연구의 목표에 도달하고자 시도한다. 칸트의 실천철학이 담긴 대부분의 주요 저작은 물론이고, 주요 저작의 초고나 짚막한 내용의 성찰원고 및 서신과 같은 수고형태의 글 또한 독해 및 체계적 분석의 대상에 포함될 것이다. 이를 통해 일면 분절적이고 단편적으로 보일 수 있는 무수한 조각들 사이에 놓인 체계성 내지 상관성을 추출해내고자 시도한다.

본 연구는 칸트가 인간의 문제들을 해결하려함에 있어서 이 시기에 들어서면서야 비로소 종교적이고 윤리적인 해법을 대신하여 사회적·정치적인 해법을 제시하게 된다는 굴리가(Arsenij Gulyga)의 주장을 공유한다. 굴리가에 따르면 칸트는 자신이 제시한 바 - 나는 무엇을 알 수 있는가? 나는 무엇을 행해야만 하는가? 나는 무엇을 희망해도 좋은가? 등의 세 가지 질문들로 세분화될 수 있는 - ‘인간이란 무엇인가’의

(Ulrich Thiele)에 의해 출간되었다. 이 책에서 탈레는 칸트에 의한 민주주의 비판의 이유와 배경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역설적으로 직접민주주의 이론의 선구자로서 칸트를 바라볼 수 있는 가능성의 탐색을 시도하고 있다. 또한 지난 2007년에는 클라르(Samuel Klar)에 의해 *Moral und Politik bei Kant*라는 책이 출간되었는데, 이 책에서 클라르는 칸트의 종교철학이 담긴 『이성의 한계 내에서의 종교(Die Religion innerhalb der Grenzen der bloßen Vernunft)』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 칸트 자신이 그러하였듯이 - 정치공동체의 특징을 윤리적 공동체와 비교하는 방식으로 칸트의 정치철학의 특징에 접근하고 있다.

질문에 대한 최종적인 해법을 다름 아닌 “사회 전체 그리고 사회적·법적 제도”에서 구하려 하였다(Gulyga 1981, 274). 그러한 맥락에서 볼 때 칸트에게 있어서 정치철학은 그가 백발에 들어서서야 비로소 전개되기 시작한 정신세계에 있어서 전적으로 하나의 새로운 영역으로 자리 잡게 되었던 것이다.

II. 천사의 국가, 인간의 국가, 악마의 국가

1. ‘천사들의 국가’

우리에게는 너무도 잘 알려진 『영구평화론』의 도입부인 여섯 개의 예비적 조항들에 이어 ‘영원한 평화’의 달성에 보다 결정적으로 기여할 3개의 확정적 조항들을 통해 칸트가 전달하려는 주된 메시지는 법적 공동체로서의 국가와 국제연맹 그리고 세계시민공동체 수립의 불가피성에 관해서이다. 즉 칸트에 따르면 각각 국내법과 국제법 그리고 세계시민법에 의거하여 개별 국가적 차원에서의 ‘공화국’과 국제정치적 차원에서의 ‘국제연맹’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구적 차원 – 오늘날의 ‘글로벌’ 차원 – 에서의 ‘세계시민공동체’ 등이 함께 수립되지 않고서는 인간이 결코 ‘영원한 평화’에 도달할 수 없다. 이러한 내용의 세 가지 확정조항들을 두 개의 보충조항들이 뒤따르고 있는데, 그 첫 번째인 <영원한 평화의 보충에 관하여>에서 칸트는 단지 그때그때의 한 시대를 살 수 있을 뿐인 인간의 의지를 넘어서는 일종의 ‘섭리’로서의 ‘자연’이 어떻게 해서 위의 세 가지 법적 공동체들의 수립을 ‘보증’하는가에 관하여 언급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원용하고 있는 ‘천사-악마’ 논의는 그 중 ‘자연’이 개별국가 차원의 법적 공동체인 ‘국가’의 수립을 어떻게 ‘보증’하는지와 관련하여 전개되는 부분이다. 칸트는 다음과 같이 먼저 ‘천사들의 국가’에 관하여 언급하고 있다.

공화적 체제는 인간의 권리에 완벽하게 상응하는 유일한 질서이다. 수립하기 가장 어려운 질서이기도 하고 유지하기란 더더욱 어려운 질서이다. 어느 정도인가 하면 많은 사람들이 다음과 같이 주장할 정도이다: 그것은 천사들의 국가임에 틀림없다. 왜냐하면 이기적인 성향을 지닌 인간들로서는 그와 같이 숭고한 형태의 체제를 감당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Kant 1795, 223).⁵⁾

5) 여기서 ‘체제’는 독일어 ‘Verfassung’을 번역한 것이다. 독일어 ‘Verfassung’의 또 다

“신들로 구성된 국민이라면 스스로를 민주적으로 다스렸을까, 그와 같은 완벽한 정부형태는 인간에게는 어울리지 않는다(Rousseau 1977, 104)”라는 루소의 『사회계약론』 속 문구를 떠올리게 하는 이 인용구를 통해 칸트는 언뜻 보아 자신이 주장하는 “공화적 체제”와 “이기적 성향을 지닌 인간들”이 서로 양립할 수 없는 관계에 놓여있음을 역설하고 있는 듯 보인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공화적 체제”의 수립 및 유지에 있어서의 어려움과 관련하여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는 바 “그것은 천사들의 국가임에 틀림없다. 왜냐하면 이기적인 성향을 지닌 인간들로서는 그와 같이 송고한 형태의 체제를 감당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라는 주장에 대하여 정작 칸트 자신은 정확히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는가이다. 다시 말해 가령 스스로 그에 동의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가 혹은 증인들의 반응을 짐짓 ‘과장된’ 내지 ‘잘못 이해된’ 것쯤으로 여기고 그와는 일정 거리를 두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가이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는 ‘천사’로 불릴 수 있는 존재들이 칸트에게 있어서 인간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외적인 강제’로서의 ‘법’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국가’를 필요로 하는 존재인지를 살펴봄으로써 우회적으로 답변을 도출해 낼 수 있다. 칸트에 따르면 천사나 신과 같은 존재가 인간과 구별될 수 있는 가장 큰 특징은 무엇보다도 그들이 (인간의 경우에 해당하는 바) “본성상 흔쾌히 이성을 따르려 하지 않는 의지(Kant 1785, 41)”의 소유자가 아니라 전적으로 “의지의 주관적인 준칙이 객관적인 법칙과 필연적으로 부합한다는 의미에서의 오로지 선할 뿐인 의지 내지 무조건적으로 선한 의지”⁶⁾의 소유자라는 사실에 있다. 다시 말해 칸트에 따르면

비록 완벽하게 선한 의지 역시 객관적인 (신의) 법칙 하에 놓이기는 마찬가지이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법칙에 부합하는 행동을 하도록 ‘강제’ 내지 ‘강요’된다고 생각될 수는 없다. 왜냐하면 그러한 의지는 자신의 주관적인 본성상 오로지 선을 떠올리는 것에 의해서만 행동으로 직결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신적인 의지나 성스러운 의지에게 일체의 명령법(Imperative)은 적용될 수 없다(Kant 1785, 42f).

른 의미인 ‘헌법’과 관련하여 칸트는 영어의 ‘constitution’에 상응하는 ‘Konstitution’, ‘Konstitutionalgesetz’, ‘Konstitutionsgesetz’ 등의 용어들을 별도로 사용하고 있다.

- 6) “오로지 선할 뿐인 의지” “무조건적으로 선한 의지” “제한 없이 선한 의한 의지” 등의 칸트식 표현은 『도덕형이상학 정초』와 『실천이성 비판』을 중심으로 무수히 등장한다.

과연 그와 같은 의지의 소유자들로서의 천사나 신이 인간들과 마찬가지로 '당위'와 '강제'를 필요로 하는 존재이겠는가?의 문제와 관련하여 칸트는 단적으로 “당위(das Sollen)가 잘못된 장소에 있는 경우(Kant 1785, 43)”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따라서 그와 같은 존재로서의 천사에게 “이성 스스로 수단으로서 규정한 강제, 즉 공적인 법칙(Kant 1793b, 169)” 내지 “공적인 강제(öffentlicher Zwang)(Kant 1797, 430)”로서의 ‘법’이, 그리고 그와 같은 법과 결코 무관할 수 없는 바 “자유가 외적인 법칙의 지배하에 있으면서 최대한 어떤 저항할 수 없는 물리적 힘과 연계되어 있는 상태(Kant 1784b, 39)”로서의 ‘국가’가 필요할 리 만무하다. 칸트에게 “공화적 체제”가 ‘이 세상에 없는 곳’이라는 의미에서의 ‘유토피아’를 의미할 뿐이라면 별 문제이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 물론 당연한 전제이겠지만 - 그것은 ‘천사들을 구성원으로 하는 정치적 공동체’의 의미와는 전적으로 무관하다.⁷⁾

2. ‘이기적인 인간들의 국가’

이와 같이 본다면 상기 인용구를 통해 칸트가 전달하려는 메시지는 단지 “공화적 체제”의 수립 및 유지가 인간에게는 너무도 어려운 작업임을 강조하는 데에 그치고 있다고 주장할 수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과연 그러할까? 이와 관련하여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칸트가 상기 인용구의 바로 몇 줄 아래에서 이번에는 다음과 같이 악마들 및 이들에 의해 세워질 수 있는 국가에 관하여 언급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국가 수립’(Staatserrichtung)의 문제는 제아무리 어렵게 들릴지라도 심지어 악마들 - 그들이 오성을 소유하고 있지만 하다면 - 로 이루어진 국민조차 해결할 수 있으며, 그 해법은 다음과 같다(Kant 1795, 224).

7) 칸트에게 있어서 ‘공화국’이 <모든 개개인들의 자유가 (기실은 오직) 그들 간의 양립 내지 조화라는 형태로서만 존립할 수 있는, 다시 말해 오직 그러한 의미로서만 만인이 자유로울 수 있는 “정치공동체 내지 국가 일체”>를 의미한다는 것, 그리고 비슷한 맥락에서 <자유와 (자유에 대한 제한을 의미하는) 법, 그리고 (법이 효력을 갖도록 해주는) 강제력>이라는 세 가지 요소의 조합에 의거하여 다양한 형태의 정치질서가 존재 ... 마지막으로 “자유와 법 및 강제력 모두가 존재하는 경우의 공화국” ... “즉 국가 일반”>이라는 표현 등은 전적으로 이러한 주장과 맥을 같이 한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칸트(Kant 1797, 429, 461: 1798, 686) 참조.

이제 우리는 앞선 인용구에서의 “천사들”에 대비하여 여기서의 “악마들” – 정확히는 ‘오성’⁸⁾을 소유한 존재로서의 악마들 – 이 대체 어떤 존재들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그러한 “악마들”에 의해서도 수립될 수 있는 국가란 과연 어떤 성격의 정치 공동체이며 상기 “공화적 체제”와는 어떤 측면에서 구별될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그에 더하여 ‘국가 수립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오성을 소유한)악마들’과 앞선 인용구에서의 “이기적 성향을 지닌 인간들”은 어떻게 구별될 수 있는 것인지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밝혀봄으로써 칸트가 전달하려고 하는 메시지에 한 발 더 다가갈 수 있으리라 판단된다.

위에서의 의문들에 대한 접근은 우선 상기 첫 번째 인용구의 뒤를 잇는 다음의 문구에 대한 이해를 시도함으로써 시작될 수 있다. 이 문구는 비록 다소 길기는 하지만

- 8) 여기서의 ‘오성(Verstand)’의 정확한 의미와 관련하여 연구자는 굳이 인식론적 차원에서의 개념 정의 – 특히 ‘이성(Vernunft)’과의 엄격한 구분에 의거한 – 에 호소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 나아가 계몽기를 전후한 양자 간의 우위관계의 변화라든가 혹은 다른 사상가들의 경우와의 차이 등에도 굳이 호소할 필요를 느끼지 않음은 물론이다. 다시 말해 ‘추론’에의 능력(Vermögen der Schlüsse)으로서의 이성에 대비되는 ‘개념’에의 능력(Vermögen der Begriffe), 즉 감각의 다양성을 개념적 통일로 이끄는 인식능력으로서의 오성의 의미보다는, 통상의 이성과 구분되지 않는 한에서의 일반적이고 평범한 사고 및 판단능력을 지칭할 뿐이라는 것이 연구자의 판단이다. 따라서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적의 수단의 모색 및 선택을 행위의 유일한 기준으로 삼는 ‘처세술’의 본질인 ‘영리함’의 출발점을 의미하는 오성> vs. <행위의 결과와 상관없이 실천적으로 불가피한 행위인가를 유일한 기준으로 하여 목적달성을 위한 수단으로서가 아니라 행위 그 자체를 목적으로 삼는 ‘도덕’의 본질로서의 ‘현명함’의 출발점을 의미하는 이성>과 같은 대비 또한 필요치 않다. 한편 우리는 칸트가 이와 같은 맥락에서 ‘오성’ 개념을 사용하는 대표적 경우로서 다음의 두 가지를 들 수 있다: “만일 나를 위해 오성을 지닌 책과 나를 위해 양심을 지닌 사제와 나를 위해 음식조절을 판단해주는 의사 등등이 나에게 있다면, 나 스스로 노력할 필요는 전혀 없다”; 자신을 국가의 제 1공복이라 칭한 프리드리히 2세와 관련하여 “흔히 현기증을 일으킬 정도의 아침 섞인 감언이설일 뿐이라고 비난하곤 하는데, 이는 근거 없다”면서 “그와 같은 명명은 지배자를 들뜨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오성을 지니고 있다면(이 전제는 당연하다) 오히려 그를 정신적으로 위축시킬 것임에 틀림없다. 왜냐하면 그는 그와 같은 명명과 관련하여 자신이 인간이 감당하기에는 너무 큰 직책, 즉 인간의 권리를 관장한다는 신이 지상에서 갖는 가장 성스러운 것으로서의 직책을 떠맡았다고, 그리고 그에 따라 혹시라도 신이 아끼는 그 보배에 해를 입히지는 않을까 늘 노심초사할 수밖에 없다고 간주해야 하는 것이 때문이다”(괄호 사용은 칸트 본인에 의한 것임). 각각 칸트(Kant 1784b, 53) 및 칸트(Kant 1795, 207).

공교롭게도 첫 번째 인용구와 두 번째 인용구 사이에 놓인 유일한 문장이기도 하다. 첫 번째 인용구의 마지막 문장인 “왜냐하면 이기적인 성향들을 지닌 인간들로서는 그와 같이 숭고한 형태의 체제를 감당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에 이어 칸트는 다소 뜻밖이게도 다음과 같이 반론을 제기한다.

그러나 자연은 비록 존경받기는 하나 실천에 있어서는 무기력한 보편적이고 이성
에 근거를 두는 의지에게 바로 그 이기적인 성향들을 통해 도움을 준다. 그에 따르
면 한 이기적 성향과 결부된 힘이 다른 이기적 성향과 결부된 힘을 파괴적인 작용으
로부터 저지하거나 혹은 파괴적인 작용 자체를 지양할 수 있도록 이기적 성향과 결
부된 힘 서로서로가 대치되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한데, 그 이유는 그럼으로써 이성
에게는 마치 양자가 언제 존재하기라도 했었냐는 듯 보이게 만드는 성공을 가져다
주게 되고, 동시에 인간은 비록 도덕적으로 좋은 인간은 못될지언정 부득불 좋은 시
민만큼은 되지 않을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사실은 이 두 가지
가 가능하게끔 이기적 성향들이 지니는 힘 서로서로를 대치시키는 일이 다른 아닌
국가를 잘 조직하느냐의 여부에 달려 있다는 것이다(국가를 잘 조직하는 것은 당연
히 인간의 능력 범위 내에 있다)(Kant 1795, 223f.).⁹⁾

이 인용구를 통해 우리는 우선 칸트에게 있어서 “공화적 체제”가 온전히 ‘천사’들
로 구성된 정치공동체를 의미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앞에서의 주장을 재차 확인할
수 있다. 그에 더하여 우리는 “공화적 체제”가 이기적인 존재로서의 인간들과는 전적
으로 무관한 공동체라는 주장을 칸트가 전혀 펴고 있지 않다(!)는 사실 또한 발견할
수 있다. 오히려 칸트에 따르면 “공화적 체제만큼은 인간들의 몫이 아니지, 천사들
이라면 모를까” 식의 주장을 펴곤 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불가능의 근거로 삼
기 마련인 ‘인간의 이기적 성향들’이야말로 “공화적 체제”를 비롯한 ‘국가’ 탄생의 실
마리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그에 따르면 다른 아닌 <이기적 성향 상호간의 대치 내지
항쟁을 유도 혹은 허용하는 것>으로서의 국가의 조직이 관건인데, 칸트에 따르면 이
는 인간이 – 본성상 이기적임에도 불구하고 – 얼마든지 자신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연구자는 칸트의 그러한 주장이 칸트의 정치철학 전반을 관통하는 기본구도를 이
해하는 데에 필요한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한다고 판단한다.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9) 괄호를 이용한 표현은 칸트 자신에 의한 것임.

〈이기적 성향들 스스로 서로 대치 내지 항쟁하도록 유도 혹은 허용하라. 그리고 자연의 기제를 활용하라〉이다. 먼저 첫 문구와 관련하여서는 〈이기적 성향들의 지양 내지 해소는 전적으로 국가의 몫이므로, 물리적인 힘을 포함한 공권력을 동원해서이든 혹은 보이지 않는 감시나 통제를 통해서이든 혹은 철저히 엄격한 (어려서부터의) 공교육에 입각한 도덕심의 함양을 통해서이든 혹은 그 무엇에 의해서이든 국가가 적극 나서거나 개입 - 인간의 이기심이 일체의 힘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애초부터 개입하든지 혹은 이기적 성향들 간의 충돌 내지 대립을 해결하거나 화해시키는 단계에서 개입하든지 - 해야 함〉이 결코 아니(!)라는 말이다. 그와는 반대로 〈국가가 관여할 사안이 아니다〉 내지 〈이기적 성향을 지닌 인간들의 집합체인 동시에 이익 극대화에 주된 관심을 갖는 개별적인 특수의지들의 집합체인 국민에게 가능한 한 모든 영역에서 - “자신의 이성을 공적으로 사용하는 자유(Kant 1784b, 55ff.)”의 의미이기도 한 “펜의 자유(Kant 1793b, 161)”를 포함한 - “최대한의 자유(Kant 1784a, 40)”를 허용하라. 비록 당시는 아직 ‘계몽의 시대’인만큼 우선 ‘종교’와 ‘양심’의 영역에서부터 출발해야 하겠지만, 점차 ‘입법’의 영역으로까지 반드시 확대되어야 한다(Kant 1784b, 59f.)〉는 말인 것이다.

한편 〈이기적 성향들 스스로 서로 대치 내지 항쟁하도록 유도 혹은 허용하라〉는 첫 번째 문구에 담긴 구체적인 의미는 〈자연의 기제를 활용하라〉는 두 번째 문구의 의미와 같이 이해될 때에 비로소 확연히 드러날 수 있는데, 이에 관해서는 다음 장에서 다루어질 것이다. 다음 장에서의 내용과는 상관없이 이상에서 우리는 칸트에게 있어서 - 다소 뜻밖이게도 - 인간의 이기적인 본성이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공화적 체제”의 건설 및 유지를 불가능하게 하는 요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런데 정작 뜻밖의 사실은 그 다음부터이다. 왜냐하면 언뜻 보아 칸트는 바로 앞에서 인용구를 통해 인간이 비록 ‘좋은 시민’은 될 수 있을지언정 자신의 이기적인 성향으로 말미암아 ‘도덕적으로 좋은 인간’까지는 될 수 없다고 주장하는 듯 보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한 마디로 〈자신의 이기적인 성향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도덕적인 존재로까지 될 수는 없다〉고 주장하는 듯 보이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우리가 “정작 뜻밖이다”라는 표현을 쓸 수밖에 없는 이유는 자명하다. 왜냐하면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칸트는 인간이 본성상 이기적인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국가 안에서 ‘좋은 시민’을 넘어 ‘도덕적으로 좋은 인간’까지도 얼마든지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식

으로까지 말할 수는 없어 보이기 때문이다. 오히려 상기 인용구의 내용에 충실하자면 <국가 수립 이후에도 여전히 이기적인 존재로서 머무는 인간으로서는 자신의 이기적인 성향으로 말미암아 비록 '도덕적으로 좋은 인간'까지는 될 수 없을지언정, 동일한 이유로 인하여 '좋은 시민'조차도 될 수 없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가능해 보일 따름이다.

『니코마코스 윤리학』에서의 문제제기에 이어 『정치학』을 통해 '좋은 인간'과 '좋은 시민'을 구분하고 양자의 일치 가능성에 관해 기술하고 있는 아리스토텔레스를 떠올리게 하는 상기 인용구를 통해 칸트가 전달하려는 주된 메시지는 과연 무엇일까? 이와 관련하여 우리는 무엇보다 비록 '도덕적으로 좋은 인간'까지는 아니더라도 - 이기적인 성향에도 불구하고 - 얼마든지 될 수 있다고 하는 '좋은 시민'이란 칸트에게 있어서 과연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해명을 필요로 한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러한 해명은 상기 두 번째 인용구에 이어 등장하는 다음의 문구와 관련되는바, '오성을 지닌 악마들의 국가로 구성된 국민에 의한 국가의 수립'이 과연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이해에 전적으로 의존한다.

3. '오성을 지닌 악마들의 국가'

가장 흥미로운 사실은 칸트가 상기 두 번째 인용구에 이어 전개하는 바 '오성을 지닌 악마들로 이루어진 국민들에 의해서도 수립가능하다는 국가의 수립' 과정이 바로 앞의 인용구에서 묘사되고 있는 바인 '이기적 성향의 인간들을 대상으로 하는 국가의 수립' 과정과 전적으로 일치한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일단 다음에 주목하자.

국가 수립의 문제는 제아무리 어렵게 들릴지라도 심지어 악마들로 이루어진 국민조차 - 그들이 오성을 소유하고 있거나 하다면 - 해결할 수 있으며 그 해법은 다음과 같다: [자신들의 보존을 위해서는 누구나 보편적인 법칙을 필요로 하면서도 내심 자신만큼은 그 법칙에서 예외가 되려는 성향을 지닌 복수의 이성적인 존재들을 다음과 같이 되도록 배열하고 그들의 체제를 수립하는 것. 즉 그들이 비록 사적인 심정(Gesinnung) 면에서는 서로에게 반한다 할지라도 (그러한 사적인 심정)서로가 서로를 저지하도록 만듦으로써 공식적으로 행동함에 있어서는 마치 그와 같이 악한 심정이라고는 전혀 지니고 있지 않은 듯 처신할 수 있음]. 이와 같은 문제는 해결될 수

있는 것임에 틀림없다. 왜냐하면 문제의 해결을 위해 정작 요구되어지는 것은 도덕적인 개선(moralische Besserung)이 아니라 자연적 메커니즘의 인간사회에의 적용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그들 모두가 강제적인 법칙의 지배하에 놓이게끔 서로가 서로를 강제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럼으로써 법칙이 힘을 갖는 평화 상태를 만드시 초래할 수 있도록 적대적인 심정들의 상호 항쟁을 유도한다는 궁극적 목적의 달성을 위해 과연 어떠한 방식으로 자연의 기제를 인간에게 적용할 수 있겠는가가 관건이 된다(Kant 1795, 224).

이 인용구를 통해 우리는 우선 칸트가 언급하는 ‘오성(Verstand)¹⁰만큼은 소유한 존재로서의 악마들’이 통상적인 의미에서의 악마, 즉 단지 심정적으로 악한 마음을 품거나 품게 만드는 단계를 넘어 악한 행동을 실행하거나 실행케 만드는 존재로서의 악마 개념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국가 수립의 문제만큼은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다는 ‘오성만큼은 소유한 존재로서의 악마들’이란 칸트에 따르면 “자신들의 보존을 위해서는 누구나 보편적인 법칙을 필요로 하면서도 내심 자신만큼은 그 법칙에서 예외가 되려는 성향을 지닌” 존재들이다. 다시 말해 자신을 제외한 다른 모두는 “강제적인 법칙의 지배”하에 들기를 바라면서도 자기 자신만큼은 그에 대한 ‘예외’이길 바라는 한 마디로 ‘이기적인’ 존재들이다. 즉 ‘자기보존’의 본능에 충실한 본성상 이기적인 존재로서의 인간 – 많은 사람들이 “공화적 체제”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을 거라 여긴다는 (첫 번째 인용구에서의) “이기적인 성향의 인간들” – 을 지칭할 뿐이다.

대부분의 근대 사상가들에게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칸트에게 있어서도 인간은 기본적으로 자기보존의 본능에 충실한 본성상 이기적인 존재이다. 그러나 칸트에 따르면 인간은 동시에 “누구나 보편적인 법칙을 필요로” 할 만큼 이성적이기도 한 존재이며, 따라서 오로지 이기적이기만 할 뿐인 존재는 아닌 것이다. 이와 같은 인간의 이중성과 관련하여 칸트는 인간을 한 마디로 “이성적인 자연존재(ein vernünftiges Naturwesen)(Kant 1797, 508, 550)”로서 규정짓는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은 『세계시민적 관점에서 본 보편사의 이념』에 나오는 다음의 문구를 통해서도 재차 확인되고 있다.

10) 여기서의 ‘오성’이 일반적이고 평범한 사고 내지 판단능력을 지칭할 뿐이라는 점에서 통상의 ‘이성’과 구분되지 않는다는 사실은 위의 각주 8)를 통해 이미 언급된 바 있다.

인간은 비록 모든 사람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칙을 희구하는 이성적인 피조물이기도 하지만, 자신의 이기적이고 동물적인 성향에 잘못 인도됨으로써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어느 곳에서든지 자신만큼은 예외가 되고 싶어 하는 존재이기도 하다(Kant 1784a, 40).

천부의 이기적인 성향으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만큼은 보편적인 강제로서의 법의 지배로부터 예외이기를 바란다는 맥락에서 인간이 굳이 악마라고 불리어져야 한다면, 그러한 의미에서의 악마가 남에게 악한 행동을 사주하거나 혹은 스스로 악한 행동을 일삼는 통상적인 수준에서의 악마가 아님은 자명하다. 따라서 이들은 앞의 첫 인용구에서 “천사들”에 대비되어 묘사되는 “이기적인 성향들을 지닌 인간들”에 다름 아닌 것이다.

III. 국가 수립과 ‘좋은 시민’의 형성

1. 국가 수립과 정치

국가 수립의 주체와 관련한 앞의 논의에서 우리는 자기 자신만큼은 “강제적인 법칙의 지배”하에 들기를 바라지 않는 이기적 성향의 존재를 ‘악마’로 부를 수는 없는 것이며, 이런 의미에서 국가는 – “공화적 체제”를 포함하여 – 문자 그대로의 천사들로만 구성될 수 있는 이른바 ‘덕의 왕국(ein Reich der Tugend)’이 아니라 본성상 이기적인 존재로서의 인간과 결코 무관할 수 없는 정치공동체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에 따르면 “공화적 체제”를 포함한 국가 일반은 적어도 수립의 주체에 관한 한 – “덕의 왕국이라 불릴 수도 있는 윤리적인 국가(ein ethischer Staat)(Kant 1793a, 753)” 내지는 “윤리적인 공동체(ein ethisches gemeinsames Wesen)(Kant 1793a, 752)”의 경우에서와는 달리 – 한편으로 ‘천사들의 국가’가 아니듯 다른 한편으로 ‘(통상적 의미에서의)악마들의 국가’ 또한 아니며, 오로지 ‘인간들의 국가’,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자면 ‘이성적인 그러나 동시에 본성상 이기적이기도 한’, 따라서 ‘오로지 이성적이지만은 않은’ 존재 – 이른바 “이성적인 자연존재” –로서의 ‘인간들의 국가’ 그 이상 이하도 아닌 것이다.

칸트에 따르면 인간은 비록 모두가 공통적으로 복종해야 하고 또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되어야 하는 보편적인 강제로서의 법을 희구하면서도 동시에 자기 자신만큼은 그와 같은 복종의 예외이기를 바라는 본성상 지극히 이기적인 존재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칸트가 그러한 점을 이유 삼아 그들에 의해서는 “공화적 체제”를 포함하여 국가 자체가 수립될 수 없음을 주장하지는 않는다. 그 이유인즉, 그러한 이기적 성향의 연장선상에서 비록 인간들이 내심으로는 서로에 반하는 - 경우에 따라서는 악한 - 심정을 품는다 할지라도, (그것을 외적인 행동으로 연결시키지는 않음으로써)외면적으로는 마치 그와 같이 부정적이거나 악한 심정을 품었을 리 만무하다는 듯 보이도록 처신할 수 있고, 이를 통해 똑같이 이기적인 타인들과의 평화로운 공존 및 그를 통한 공동체적 삶의 영위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다만 그것이 가능하려면 반드시 “한 이기적 성향과 결부된 힘이 다른 이기적 성향과 결부된 힘을 파괴적인 작용으로부터 저지하거나 혹은 파괴적인 작용 자체를 지양할 수 있도록 이기적 성향과 결부된 힘 서로서로가 대치되도록” 혹은 달리 말해 오로지 “(그러한 사적인 심정)서로가 서로를 저지하도록” 국가가 조직되는 것이 과제로서 남게 되는데, 칸트에 따르면 이 과제의 해결 또한 본성상 이기적 존재라는 인간의 태생적 한계와는 무관하게 전적으로 인간의 능력 안에 놓여 있다. 그 이유인즉, 그와 같은 과제의 해결이 칸트에 따르면 “도덕적인 개선”에 의존하는 대신에, 전적으로 ‘자연적 메커니즘을 인간사회에 어떻게 적용하느냐’의 여부에 의존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칸트가 주장하는 바 인간사회에 적용될 수 있어야 한다는 자연적 메커니즘이란 대체 어떤 것일까? 칸트에 따르면 가령 다음과 같은 것이다.

마치 숲 속 나무들의 경우, 각자가 다른 나무들에게 공기와 햇빛을 빼앗기지 않으려 애쓰으로써 결과적으로 각자 자신이 이 두 가지만큼은 꼭 확보하도록 서로가 서로를 강제하는 꼴이 되고, 그 결과로서 모든 나무들이 보기 좋고 깨끗하게 자라나게 되는 이치와 같다. 반면에 같은 무리들로부터 떨어져 자유로움 속에서 가지를 제멋대로 뻗고 자라나는 나무들은 기형으로 그리고 기울어지고 굽은 형태로 자라나게 된다(Kant 1784a, 40).

내용적인 면에서 <이기적 성향들 스스로 서로 대치 내지 항쟁하도록 유도 혹은 허용하라>의 경우에서와 조금도 다르지 않은 이 인용구에 담긴 메시지는 인간의 “최대한의 자유”와는 동전의 양면 관계에 있는 구성원들 상호간의 “예외 없는 항쟁(ein

durchgängiger Antagonism)(Kant 1784a, 39)” 혹은 달리 표현하여 “인간의 비사교적 사회성(ungesellige Geselligkeit der Menschen)(Kant 1784a, 37)”에서의 ‘비사교적 특성(Ungeselligkeit)’이야말로 문화나 예술을 비롯하여 가장 훌륭한 사회질서의 원천이라는 칸트의 인식에 다름 아니다.

비록 내면적으로는 상대방에게 반하는 (경우에 따라서는 악한) 심정을 품을 수 있을지언정 눈에 보이기 마련인 행동에 있어서는 법을 위반하지 않으므로써 - 다시 말해 내면적으로 상대방에게 반하는 (경우에 따라서는 악한) 심정을 품는 데에 그치지 않고 그것을 외적인 행동으로 그대로 표출하여, 혹은 달리 말해 자유를 자의적으로 행사하여 타인의 적법한 자유를 제한 내지 침해하게 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함으로써, 즉 “좋은 시민만큼은 부득불 되지 않을 수 없게” 됨으로써 - 궁극적으로 모든 이의 자유를 가능케 하는 ‘법의 지배’에 기여 혹은 동참한다는 전제하에서 이루어지는 사적인 이해의 최대한의 추구, 다시 말해 법이 정하는 한계를 이탈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의 최대한의 사적인 자유의 실현은 결과적으로 모든 이기적 성향들 상호간의 대립과 항쟁 혹은 달리 말해 “비사교적 사회성”에서의 ‘비사교적 특성’에 기초한 것인 바, 칸트에 따르면 이것은 모든 문화와 예술의 원천일 뿐만 아니라 바람직한 정치질서의 원천이기도 하다. 그와 같이 하여 칸트에게 있어서 개개인의 “최대한의 자유”의 추구하고 구성원들 상호간의 “일반적인 항쟁”의 의미로서의 ‘비사교적 특성’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관계를 유지하며 국가 수립의 주역으로 자리 잡게 된다.

한편 『영구평화론』에서 칸트가 정치를 “인간을 통치하기 위해 자연의 기제를 이용하는 기술(Politik als Kunst, den Mechanism der Natur zur Regierung der Menschen zu benutzen)(Kant 1795, 232)”로 규정하고 있다는 사실에 근거한다면, 결국 칸트에게 있어서 “공화적 체제”를 포함한 국가의 수립이라는 과제의 해결은 궁극적으로 도덕 혹은 “도덕적 개선”이 아닌 (자연의 기제를 인간사회에 적용하는 기술로서의) 정치에 의해 가능해 진다. 이러한 사실은 같은 책에서의 또 다른 표현인 “도덕성으로부터 좋은 국가적 질서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거꾸로 좋은 국가적 질서로부터 국민의 좋은 도덕적인 형성을 기대할 수 있다(wie denn auch nicht von der Moralität die gute Staatsverfassung, sondern vielmehr, umgekehrt, von der letzteren allererst die gute moralische Bildung eines Volkes zu erwarten ist)(Kant 1795, 224)”는 칸트의 주장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비록 “국민의 좋은 도덕적인 형성”을 기대케 할 수 있을 정도의 “좋은 국가적 질

서”가 갖추어 지기 위해서는 칸트가 첫 번째 확정조항을 통해 “공화적 체제”로서의 개별국가들이 갖추어야 할 필수 요소들로 규정하고 있는 “인간으로서의 자유”와 “시민으로서의 평등” 외에 “신화된 자로서의 공동의 입법예외의 예외 없는 복종”과 더불어 ‘행정권으로부터의 입법권의 분리’ 및 ‘대의 체제(repräsentatives System)의 확립’ 등이 추가적으로 가능해야 하겠지만(Kant 1795, 204ff.), 그렇다고 해서 그러한 요건들을 갖추는 일이 계속해서 정치의 몫에 해당할지언정 도덕의 몫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판단된다(이와 관련해서는 별도의 논의가 추가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하여 우리는 국가 수립의 문제에 관한 한 칸트가 심정상의 동기라는 인간의 내면세계와 직결되는 도덕의 문제와는 구분하여 생각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2. 합법성과 ‘좋은 시민’의 형성

앞 절에서의 논의에 담긴 중요한 사실 한 가지는 ‘자연의 기제를 인간사회에 적용하는 기술로서의 정치’에 기반을 둔 (“공화적 체제”를 포함한) 국가의 수립이 (각자의 “최대한의 자유”가 갖는 한계를 정확히 규정함으로써 모든 사람의 자유를 가능케 하려는) 법규범의 확립과 그러한 법예외의 보편적인 복종에 기반해야 한다는 것, 다시 말해 이기적 성향의 인간들 모두가 서로를 강요하는 형태를 취함으로써 누구나 예외 없이 “강제적인 법칙의 지배”하에 진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비록 ‘자기 자신만큼은 예외이기를 바라는’ 이기적인 성향으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할지라도,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은 예외 없이 “공적인 법칙의 강제(Kant 1795, 223)”에 복속됨으로써 법의 지배하에 놓여야 하는 것이다.

자기 자신만큼은 보편적인 강제로서의 법예외의 무조건적인 복종에서 예외가 되기를 바라는 이기적인 존재로서의 인간이 “공식적으로 행동함에 있어서는 마치 그와 같이 악한 심정이라고는 전혀 지니고 있지 않은 듯 처신”하는 데에 성공할 수 있는 것 역시 어떻게 해서든 – 이익 극대화 내지 손실 최소화의 차원에서이건 혹은 여타 다른 목표의 달성을 위한 수단 선택의 차원에서이건 – 법을 준수하고 냈을 때의 일이지 거꾸로 법의 준수를 거부했을 때일 수는 없다. 혹은 달리 말해 최소한 외부로 드러나기 마련인 행위에 있어서만큼은 심정상의 동기가 무엇이건 간에 법에 부합하여 행동하라는 이성의 명령을 좇았을 때인 것이다.

‘자신만큼은 예외이길 바라는 존재’로서 이건 혹은 ‘심정적으로 상대방에 반하는

존재’로서 이견 ‘이기적인 존재로서의 인간’이 눈에 보이기 마련인 행동에 있어서만큼은 예외 없이 법에 부합할 수 있음으로써, “설사 도덕적으로 좋은 인간은 아닐지라도 좋은 시민만큼은 부득불 되지 않을 수 없다.” 다시 말해 칸트에게 있어서의 “좋은 시민”은 설사 심정상의 동기와 관련된 행위의 도덕성(Moralität)이 확보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 혹은 달리 말해 “법칙에 대한 외경심”¹¹⁾을 심정상의 유일한 동기로 삼거나 법칙의 준수 자체를 유일한 목적으로 삼지 못한다 할지라도 – 겉으로 드러나기 마련인 행동에 있어서의 적법성 내지 합법성(Legalität)만큼은 확보될 수 있음으로써 형성될 수 있다. 행위의 합법성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반드시 심정상의 동기와 관련된 도덕성 또한 확보될 수 있을 때 비로소 가능한 “도덕적으로 좋은 인간”과는 사뭇 다른 것이다.

이와 같이 하여 자기 자신만큼은 예외이길 바라곤 하는 인간, 왕왕 심정적으로 상대방에 반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악한 감정을 품을 수 있는 인간이 비록 “도덕적으로 좋은 인간”의 자격으로는 아니지만 법에 부합하는 행위를 통해 “좋은 시민”의 자격으로 국가라는 정치질서 안으로 통합된다. 즉 법의 준수를 통해 타인의 적법한 자유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나 제한 내지 침해를 유발하지 않음으로써 궁극적으로 모든 이의 자유를 가능케 하는 유일한 조건으로서의 법의 지배를 가능케 하고 더불어 ‘공동의 삶(Miteinanderleben)’ 형성에 기여하게 되는 것이다.

국가라는 법적 공동체의 수립이 궁극적으로 행위의 ‘도덕성’이 아닌 ‘합법성’에 의존한다는 점을 칸트는 대표적 종교철학서인 『순수 이성의 한계 내에서의 종교』에서 ‘법적인 공동체’(ein juridisches gemeines Wesen)와 ‘윤리적인 공동체’(ein ethisches gemeines Wesen)를 대비시키는 과정에서 재차 확인시켜주고 있다. 그에 따르면

윤리적인 공동체 안에서는 모든 법칙들이 본래 행위의 도덕성(이것은 내적인 것이며 따라서 인간의 공적인 법칙들 밑에 놓일 수 없다)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반면, 법적인 공동체를 구성하는 인간의 공적인 법칙들은 눈에 보이기 마련인 행위의 적법성만을 목표로 할 뿐 … (내적인) 도덕성을 목표로 하지는 않는다(Kant 1793a, 757f.).

11) “Actung fürs Gesetz” 혹은 “Actung vor dem Gesetz” 등의 표현 역시 법철학 관련 칸트의 저작 대부분에서 반복해 등장하고 있다.

클라르(Samuel Klar)가 지적하듯 “시민사회는 적법한 원칙의 왕국으로 불릴 수 있는바, ‘법의 왕국’(Reich des Rechts)에서는 합법성만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공동체 구성원들의 심정은 전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Klar 2007, 150)”는 것이다.

이상과 같이 하여 ‘보편적인 강제로서의 법’에의 무조건적인 복종과 그에 따른 법의 지배는 - 자연의 기제를 인간사회에 적용하는 기술로서의 정치에 힘입어 - 칸트에게 있어서 국가 건설에 필요한 선택이 아닌 필수로서 자리하게 된다. “모든 정치는 법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한다(Kant 1795, 244, 250)”는 칸트의 주장이나 “자연은 결국 법이 주도권을 갖길 바란다(Kant 1795, 225)”는 칸트의 주장은 “이론적인 법 이론으로서의 도덕에 대비되는 실천적인 법이론으로서의 정치(Politik als ausübende Rechtslehre)(Kant 1795, 229)”¹²⁾라는 표현과 더불어 전적으로 이러한 맥락에 따라 이해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칸트에게 있어서 정치와 도덕의 관계는 결국 정치와 도덕 및 법이라는 삼자 간의 관계 속에서 보다 잘 파악될 수 있는 것이다.¹³⁾

IV. 결론

이상에서 본 연구는 ‘먼저 도덕에 경의를 표하고 나서야 전진할 수 있는 것으로서의 정치’ 혹은 ‘오로지 도덕에 복속됨으로써만 정당성을 얻는 것으로서의 정치’ 혹은 ‘도덕물의 실현에 봉사해야 하는 것으로서의 정치’ 등의 표현으로부터 ‘정치’ 혹은 ‘정치적인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가리키지는 지가 드러나는 것은 아니라는 판단하에, 지금껏 충분히 주목받지 못한 텍스트의 해석에 기초하여 법이나 도덕으로 환원되어 지지 않는 ‘정치’ 혹은 ‘정치적인 것’ 고유의 특징을 국가 수립의 경우를 통해 찾아보고자 시도하였다. 무엇보다 본 연구는 『영구평화론』에 등장하는 세 가지 종류의 국

12) 도덕과 대비해 정치가 갖는 실천적 측면을 강조하는 칸트의 또 다른 표현으로는 “법의 형이상학과 같은 개념들을 경험적 사례들에 적용하는 정치의 원칙”이 있다(Kant 1797, 642).

13) ‘칸트에게 있어서 도덕은 전적으로 주관성의 영역에만 머물게 됨으로써 일체의 객관성을 획득하지 못하는 반면 법은 그와는 반대로 전적으로 객관성의 영역에만 머물게 됨으로써 거꾸로 일체의 주관성을 획득하지 못한다’는 비판, 다시 말해 법과 도덕 양자가 상호 매개되지 못한다는 헤겔식의 비판을 피해갈 수 있게끔 ‘칸트 스스로 정치에 근거해 도덕과 법을 매개하고자 시도하였는가’와 관련하여서는 향후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가에 초점을 맞추고 그들 사이의 연관성에 주목하면서 국가 수립의 문제를 고찰하였다.

칸트에게 있어서 “공화적 체제” 즉 공화국은 “덕의 왕국” 내지는 “천사들의 국가”를 의미하지 않는다. ‘당위’라는 개념과는 전혀 어울릴 수 없는 천사나 신과 같은 존재가 이기적 성향의 인간들과 마찬가지로 ‘강제’의 성격을 지닐 수밖에 없는 ‘법’의 지배를 본질로 하는 ‘국가’를 필요로 할 리 만무하다. 다시 말해 “천사들의 국가”란 존재할 수 없으며, 만일 국가라는 것이 존재한다면 그것은 오로지 이기적 성향의 인간들 – 곧 ‘오성만큼은 소유한 악마들’ – 을 구성원으로 하는 국가만이 존재할 수 있는 것이다. “공화적 체제”를 포함한 국가의 수립은 비록 자신만은 예외이기를 바라는 이기적 성향의 인간들일지라도 심정상의 동기와 관련된 도덕성의 확보와는 무관하게 겉으로 드러나기 마련인 행위에 있어서의 적법성이 확보됨으로써 – 즉 “부득불 좋은 시민만큼은 되지 않을 수 없”음으로써 – 가능해진다. 따라서 이를 위해 정작 필요한 것은 (지도자를 포함한)공동체 구성원의 도덕적 개선과 같은 것이 아니라 “그들 모두가 강제적인 법칙의 지배하에 놓이게끔 서로가 서로를 강제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럼으로써 법칙이 힘을 갖는 평화 상태를 반드시 초래할 수 있도록 적대적인 심정들의 상호 항쟁을 유도한다는 궁극적 목적의 달성을 위해 과연 어떠한 방식으로 자연의 기제를 인간에게 적용할 수 있겠는가”이다. ‘정치’를 “인간의 통치를 위해 자연의 기제를 이용하는 기술”로 명명할 수 있는 한, 정작 필요한 것은 정치인 셈이다.

이를 종합하자면, 칸트에게 있어서 공화국을 비롯한 국가의 수립은 궁극적으로 ‘도덕적으로 좋은’의 의미로서의 ‘좋은 인간’의 형성과는 무관한바, 내면의 세계에 해당하는 ‘심정’과는 달리 겉으로 드러나기 마련인 ‘행위’의 적법성에 기초한 ‘좋은 시민’의 형성에 의존한다. 나아가 이를 위해 절실히 요청되는 것은 “도덕적인 개선”이기보다는 “자연적 메커니즘의 인간사회에의 적용”이다. 이 때 “인간의 통치를 위해 자연의 기제를 이용하는 기술”을 ‘정치’라 부를 수 있는 한, 결과적으로 칸트에게 있어서 국가 수립의 문제는 한 마디로 ‘정치’의 몫인 것이다. 이와 같이 하여 본 연구는 국가 수립의 경우를 통해 칸트에게 있어서 법이나 도덕으로 환원되어지지 않는 정치 혹은 정치적인 갖는 고유의 특성, 즉 독자성에 관해 살펴볼 수 있었다.

그러나 이것이 “진정한 정치는 먼저 도덕에 경의를 표하고 나서야 전진할 수 있다”는 칸트의 명제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칸트에게서 발견되는 바 정치와 도덕의 바람직한 관계와 관련해 전면적인 수정이 가해져야 함을 의미

하는 것은 더욱더 아닌 것이다. 칸트가 “인간의 통치를 위해 자연의 기제를 이용하는 기술”로서의 정치를 ‘먼저 도덕에 경의를 표하고 나서야 전진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았다는 데에는 변함이 없는 것이다. 오히려 본 연구는 <정치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기에 “먼저 도덕에 경의를 표하고 나서야 전진할 수 있다”는 것인가>에 대한 답변을 구해보고자 하였다. 무엇보다 본 연구는 상기 칸트의 명제에 대한 슈람이나 슈반식의 해석과 관련하여 정치를 “오로지 도덕에 복속됨으로써만 정당성을 얻”을 수 있는 것 혹은 “도덕률의 실현에 봉사할 뿐”인 것으로 이해하는 데에 머물러야 하는지에 대해 강한 의문을 제기하였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판단이다. 칸트 역시 대부분의 근대 사상가들과 마찬가지로 법이나 도덕으로 환원되어지지 않는 정치고유의 영역을 용인하였는바, “공화적 체제”를 포함한 국가의 수립이 대표적 사례임을 본 연구를 통해 확인하였다.

한편 본 연구는 본론의 모두에서 『영구평화론』의 도입부인 여섯 개의 예비적 조항들에 이어 ‘영원한 평화’의 달성에 보다 결정적으로 기여할 3개의 확정적 조항들을 통해 칸트가 전달하려는 주된 메시지가 법적 공동체로서의 국가와 국제연맹 그리고 세계시민공동체의 수립의 불가피성에 관해서였음을 언급한 바 있다. 칸트의 주장인즉, 각각 국내법과 국제법 그리고 세계시민법에 의거하여 개별 국가적 차원에서의 ‘공화국’과 국제정치적 차원에서의 ‘국제연맹’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구적 차원 - 오늘날의 ‘글로벌’ 차원 - 에서의 ‘세계시민공동체’ 등이 함께 수립될 때에 비로소 ‘영원한 평화’에 도달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다. 그렇다면 본 연구를 통해 고찰하였는 바 개별 국가적 차원에서의 공화국의 수립을 넘어 국제정치적 차원에서의 국제연맹과 지구적 차원에서의 세계시민공동체를 수립하는 것, 그리고 그럼으로써 비로소 영원한 평화에 한 발 다가서는 것 등의 과제가 - “공화적 체제”를 포함한 국가 수립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 정치에 의해 해결될 수 있는 것인지가 추후 논구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투고일: 2016년 4월 28일

심사일: 2016년 5월 15일

게재확정일: 2016년 6월 10일

참고문헌

본 연구에서 인용되는 칸트의 저작은 기본적으로 바이슈델(Wilhelm Weischedel 1991, 9th ed.)에 의해 출간된 총 12권의 칸트선집(Werk Ausgabe로 표시)에 의거한다. 칸트 생존 시에 출간된 대부분의 저작들이 이에 망라되어 있다. 반면 칸트 사후에 출간된 몇몇 논문들을 포함하여 주요 저작들의 초고와 성찰원고 등 수고의 경우에는 1900년대에 들어와 출간되기 시작한 총 29권의 독일 학술원판 칸트전집(Akademie Ausgabe로 표시)에 의거하였다. 출간년도의 표기와 관련하여서는 선집(Werk Ausgabe)에 수록된 글들의 경우에는 그들 각각의 출간년도를, 반면에 전집(Akademie Ausgabe)에 수록된 글들의 경우에는 해당 글을 싣고 있는 전집 내 해당 권수의 출간년도를 기재한다.

김용민. 2001. “루소의 일반의지에 나타난 권력 개념: 정당성을 중심으로.” 『정치사상연구』 5집, 105-124.

정호원. 2007. “칸트에게 있어서의 자유와 법의 상관관계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논집』 38집 1호, 1-18.

_____. 2008. “칸트의 대의 개념에 관한 연구.” 『정치사상연구』 14집 2호, 85-113.

Gerhardt, Volker. 1995. *Immanuel Kants Entwurf >Zum ewigen Frieden<: eine Theorie der Politik*. Darmstadt.

Gulyga, Arsenij. 1981. *Immanuel Kant*. übersetzt v. S. Bielfeldt. Frankfurt/Main.

Kant, Immanuel. 1763. “Der einzig mögliche Beweisgrund zu einer Demonstration des Daseyns Gottes.” *Werk Ausgabe*. Vol.2.

_____. 1784a. “Idee zu einer allgemeinen Geschichte.” *Werk Ausgabe*, Vol.11.

_____. 1784b. “Beantwortung der Frage: Was ist Aufklärung?” *Werk Ausgabe*, Vol.11.

_____. 1785. “Grundlegung zur Metaphysik der Sitten.” *Werk Ausgabe*, Vol.7.

_____. 1793a. “Die Religion innerhalb der Grenzen der bloßen Vernunft.” *Werk Ausgabe*, Vol.8.

_____. 1793b. “Über den Gemeinspruch: Das mag in der Theorie richtig sein, taugt aber nicht für die Praxis.” *Werk Ausgabe*, Vol.11.

_____. 1795. “Zum ewigen Frieden.” *Werk Ausgabe*, Vol.11.

_____. 1797. “Die Metaphysik der Sitten.” *Werk Ausgabe*, Vol.8.

_____. 1798. “Anthropologie in pragmatischer Hinsicht.” *Werk Ausgabe*, Vol.12.

Kater, Thomas. 1999. *Politik, Recht, Geschichte – Zur Einheit der politischen Philosophie*

Immanuel Kants. Würzburg.

Klar, Samuel. 2007. *Moral und Politik bei Kant*. Würzburg.

Rousseau, Jean. J. 1977. *Vom Gesellschaftsvertrag oder Grundsätze des Staatsrechts*. übersetzt v. Hans Brockard. Stuttgart.

Schramm, Gerhart. 1938. *Das Problem der Staatsform des deutschen Staatstheorie des 19. Jahrhunderts insbesondere in der Staatsphilosophie des Idealismus*. Berlin.

Schwan, A. 1993. "Kants Freiheitsgesetz und republikanische Regierungsart." In Hans-Joachim Lieber, ed. *Politische Theorien von der Antike bis zur Gegenwart*, 157-257. Bonn.

Thiele, Ulrich. 2003. *Repräsentation und Autonomieprinzip - Kants Demokratiekritik und ihre Hintergründe*. Berlin.

樽井正義. 2009. "정치." 坂部惠 편. 이신철 역. 『칸트사전』, 372-373. 서울: 도서출판b.

_____. 2009. "정치철학." 坂部惠 편. 이신철 역. 『칸트사전』, 373-374. 서울: 도서출판b.

ABSTRACT

Kant and the Meaning of Politics or the Political: Focussing on the Problem of Establishment of State

Ho Won Joung | Yonsei University

This study eventually seeks to get to Immanuel Kant's position on the relationship between moral and politics who is better known as a master of moral philosophy rather than that of political philosophy. Its final goal lies in finding out the uniqueness of politics or the political from Kant's practical philosophies, which can not be reduced to law or moral.

Establishment of state including republic for Kant has nothing to do with building of 'good man' in the meaning of 'morally good' but depends on building of 'good citizen' which is based upon legality of conduct that can not but be visible. And what is necessary for that is not "moral improvement" but how we apply natural mechanism for human society. As long as we can regard politics as "skills, utilize the natural mechanism for ruling human beings" as Kant actually does, the problem of establishment of state, in short, belongs to domain of politics, not moral.

Keywords: moral and politics, establishment of state, legality and morality, good man and good citizen

